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외부 공개 금지 〉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98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4.
3. 회부연월일 : 2024.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는데,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교육부장관·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제1항에 따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¹⁾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과정에 활용되는 데,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상담결과 등을 바탕으로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학생은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제공받게 됨²⁾.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은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³⁾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⁴⁾.

2)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및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 과목·방법 및 일정 등을 알려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평가문항 및 그 결과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4) 서울(효력정지), 경기, 강원, 광주, 세종,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한편,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⁵⁾ 학교 간 경쟁 과열과 학교 서열화, 사교육 조장 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됨.

이에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에 해당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⁶⁾ 조례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였고,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동 조례는 대법원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황임.

현행 법령상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인바, 개정안은 서울시의회의 사례와 같이 자치법규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자의적으로 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5)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 공개)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등의 현황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대법원 2023추5054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경우 그 목적이 학습지원대상의 조기발굴을 통한 지원 강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필평가 외에 관찰 또는 면담 등의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찰 결과와 면담 결과 등이 공개될 경우 해당 학생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해 해당 검사가 당초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나아가 검사 결과의 신뢰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해당 규정의 예외로 학생의 보호자에게만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학습지원교육이 학교 외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와 같이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검사 결과 공개까지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참고로, 기초학력진단검사 외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매년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교육부는 매년 해당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학업 성취수준을 교과별·성별·지역규모별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의 경우 학교 서열화와 줄세우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별·학교별 점수 등 세부적인 정보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현재도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보호자에 대한 통지 이외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정책 수립 및 지원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임.

다만,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 개정안의 경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입법과 재정 지원, 학술연구 등 반드시 협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가 비식별처리된 정보까지 공개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가 보유한 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와 상호 충돌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공개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기초학력 진단은 진단검사와 교사의 관찰 및 상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점, 공개할 경우 학생에 대한 낙인, 시도별·학교별 서열화 및 사교육 과열 현상 등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에서 개정안에 이견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86